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건·사고 조사규정

표준번호	HW-SHP-1022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1 of 5

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관리
7. 관련규정

프로세스 책임		안전환경관리부		작 성 자	공 도 현
결 재	구 분	검 토	확 인	승 인	표준원본 관리팀 등록 확인
	팀 명	안전환경관리부	안전환경관리부		☐ 관리본 ☐ 비관리본
	직 위	주임	부장	대표이사	
	성 명	공 도 현	김 병 후	이 수 대	
	서 명				등록확인

개 정 이 력	개정 번호	제,개정일자	주 요 개 정 내 용	배포장소 (관리책임: 시스템담당)
	0	2022. 08. 01	ISO45001 인증 추진에 따른 제정	
	1	2022. 12. 07	심사결과 부적합 발생에 따른 개정	
	2	2023. 08. 01	IS14001 통합에 따른 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건·사고 조사규정

표준번호	HW-SHP-1022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2 of 5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와 산업재해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전 임직원을 포함하여 회사를 출입하는 전 방문객에게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사내, 사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고, 사건과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제반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와 업무처리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사고로 이어질 잠재성이 있는 일을 말한다. (아차 사고 포함)

3.2 아차 사고

이상상태에 의한 인적, 물적 손실을 수반할 뻔한 비 손실 사고를 말한다.

3.3 사고

사망, 직업병, 상해, 손상 또는 기타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

3.4 산업 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기타 작업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완 되는 것을 말한다.

1) 중대 재해

-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②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③ 부상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④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중상해

- ①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재해

3) 경상해

- ① 3일 이상 3개월 미만 요양을 요하는 부상으로 취업에 지장이 없는 재해

4) 경미재해

- ① 가벼운 찰과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재해

5) 응급 치료

- ① 24시간 이내에 치료된 가료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 1) 사고보고서를 승인한다.
- 2) 중대재해 등의 발생시 후속조치완료 후 작업재개에 대한 책임이 있다.

4.2 안전환경관리팀장

- 1) 각 부서의 아차사고를 분기별로 보고 받고, 이를 취합하여 관리하며, 부서에서 협조 요청 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건·사고 조사규정

표준번호	HW-SHP-1022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3 of 5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 사고 보고서를 검토한다.

3) 피해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를 한다.

4)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 보고서"는 48시간내 서면 보고하고,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계 기관(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근본적 문제점 및 재해요인의 인적, 물적, 관리적 요인에 의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유사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4.3 각 부서장

1) 부서원이 작성한 아차사고를 검토 승인하며, 분기별로 안전환경관리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아차사고 및 잠재위험에 대한 조치 및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필요 시 안전환경관리팀장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2) 안전사고 발생원인 조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재해발생 부서는 즉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환경관리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재해발생 부서는 근본적 문제점 및 재해요인의 인적, 물적, 관리적 요인에 의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유사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4.4 최초 목격자

1) 피해기계 (근본원인)을 정지토록 한다.

2) 피해자를 재해지역에서 안전한 장소로 구출한다.

3) 안전사고 발생원인 조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5.1 사건(아차사고) 및 잠재위험 관리

1) 각 부서의 근로자는 해당 부서 내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위험 및 재해로 이루어 질뻔한 경험 (아차사고) 등을 발굴하여 "아차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결재를 받는다.

2) 결재를 득한 "아차사고"를 파일링 하고, "아차사고등록 현황표"에 기록 관리하며, 분기별로 안전환경관리팀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3) 해당 부서장은 잠재위험에 대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안전환경관리팀장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4) 안전환경관리팀장은 각 부서에서 보고 받은 "아차사고"를 취합하여 종합관리를 하여야 하며, 부서별 성과 측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2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사항

1) 사고(재해) 발생 시 해당 관리감독자 및 최초 목격자는 아래 순서대로 긴급조치를 취하게 한다.

(1)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기계를 정지시킨다.

(2) 피해자를 재해지역에서 안전한 장소로 구출한다.

(3)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4) 안전환경관리팀에게 즉시 통보한다.

(5) 2차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긴급사항의 경우 작업장 내 인원을 대피시킨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건·사고 조사규정

표준번호	HW-SHP-1022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4 of 5

- (6) 현장을 보존하고, 재해자를 응급조치 한 후 안전환경관리팀으로 통보하여 구급차로 후송토록 하고,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와 동시에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7) 중대재해 발생 시 관계 기관에 지체없이 즉시 보고한다.
- 2) 안전환경관리팀장은 사고 발생 접수 즉시 환자 후송하고, 사고현장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3 안전사고 발생 조사 및 보고

1) 안전사고 발생시 조사 방법

- (1) 언제(일시), 어디서(장소), 누가(행위자), 무엇을(행위내용), 어떻게(경위), 왜(이유) 재해가 발생하였는가의 순서대로 조사한다.
- (2) 재해 조사 시 목격자, 재해자, 가해자 및 해당 관리감독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다.
- (3) 안전관리관리팀장은 재해발생 통보 즉시 사고의 원인, 피해정도, 재해자 및 목격자의 인적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일반 사고 발생 시 (인적, 물적, 교통사고, 화재 등)

- (1) 재해발생 부서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환경관리팀장에게 통보하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산재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안전환경관리팀장(현장안전관리자)은 해당 관리 감독자 또는 목격자, 가해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요양신청서 등 그 밖의 행정 서비스 기관의 보고서 양식을 출력, 작성하여 요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해당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산재은폐, 지연보고 또는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 (3) 사고 발생 후 작업재개는 관계기관의 작업중지 해재명령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해재 사유 이후 현장소장의 책임하에 작업을 재개한다.

3) 중대재해 및 중상해, 경상해 발생 시

- (1)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목격자 및 관리감독자는 재해자를 응급조치 한 후 안전환경관리팀으로 통보하여 긴급 후송 및 현장 보존토록 하고, 재해발생 부서는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 재해발생 부서에서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환경관리팀에게 통보한다.
- (3) 안전환경관리팀장(현장안전관리자)은 산업재해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 관계기관 (지방 고용노동청 등)에 통보한다.
- (4) 해당 보고자는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은폐, 지연보고 또는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 (5) 사고 발생 후 작업재개는 관계기관의 작업중지 해재명령 이후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작업을 재개한다.

4) 경미상 (비 산재) 일 경우

- (1)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의 가볍게 치료할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선 치료 후 후불 처리한다.
- (2) 치료 완료 후 재해발생 부서에서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환경관리팀에게 통보한다.
- (3) 사고 발생 후 작업재개는 현장소장의 책임하에 작업재개를 한다.

5.4 예방 대책 수립

- 1) 재해발생 부서와 안전관리관리팀에 협조하여 근본적 문제점 및 재해요인의 인적, 물적, 관리적 요인에 의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 유사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재해발생 부서와 안전환경관리팀에 협조하여 해당재해에 대한 원인대책과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고사례에 대한 전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건·사고 조사규정

표준번호	HW-SHP-1022
개정일자	2023. 08. 01
개정번호	2
페이지	5 of 5

6. 기록관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건을 기록, 조사, 분석하며 신속하게 응급조치 등 사후처리를 행한 결과들은 문서화된 정보관리규정(HW-QESHP-751)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기록명	관리부서	양식 번호	보존기간
사고보고서	안전환경관리부	HW-안전-001	5년
사고 추정 보고서	안전환경관리부	HW-안전-011	5년
아차사고 보고서	안전환경관리부	HW-안전-029	현장종료
아차사고 등록 현황표	안전환경관리부	HW-안전-030	현장종료

7. 관련 규정

- 1) 위험성 평가 규정
- 2) 교육훈련 규정
- 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규정